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354
----------	-------

발의연월일 : 2026. 9. 11.

발 의 자 : 이언주 · 오세희 · 박희승
장철민 · 백혜련 · 김한규
허성무 · 정준호 · 박범계
임미애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글로벌 공급망 재편, 첨단기술 패권경쟁,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글로벌 통상질서가 급변하면서 경제안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따라 새로운 통상현안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역할 확대가 요구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대한투자무역진흥공사의 설립 목적과 사업 범위는 전통적인 무역 및 투자 진흥에 중점을 두고 있어, 정부 정책 및 현장 수요에 따라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온 공사의 역할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이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설립 목적에 경제안보 지원 기능을 추가하여 해외 무역관 네트워크를 활용한 공급망 정보수집, 대체 공급선 발굴 등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제1조).

또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무역 진흥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유치 및 국내 기업의 해외투자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이에 해외 사무소의 법정 명칭을 기존의 무역관에서 무역투자관으로 변경하여 근거법상 기관 고유기능과의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제3조).

아울러, 정부 정책 및 현장 수요에 따라 수행하고 있는 첨단산업 인재 유치, 공급망 안정화 관련 사업,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지원, 국내·해외진출기업 물류 지원,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지원, 서비스 수출 및 디지털 무역 지원 등 주요 기업지원 기능을 공사 사업범위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변화된 정책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고 관련 사업의 지속적·체계적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보완하려는 것임(제10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정부간 수출계약 등”을 “정부간 수출계약, 경제안보 지원 등”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지사·무역관·사무소”를 “지사·무역투자관·사무소”로 한다.

제10조제1항제7호 중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 전문인력의 유치 지원”을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첨단산업 분야를 포함한 해외 전문인력의 유치 지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및 11호를 각각 제16호와 제17호로 하며, 같은 항 제9호의2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6호(종전의 제10호) 중 “제9호까지 및 제9호의2”를 “제15호까지”로 한다.

11. 공급망 모니터링, 다변화 및 자립화, 긴급수입 등 공급망 안정화와 관련된 사업
12.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
13. 국내기업의 수출물류 및 해외 진출기업의 해외 물류 지원
14.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및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관련 지원
15. 서비스 분야 해외진출 지원과 전자상거래 등 디지털·기술을 기

반으로 하는 무역거래 지원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업무) 이 법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를 설립하여 무역진흥과 국내외 기업 간의 투자 및 산업 기술 협력의 지원, 해외 전문인력의 유치 및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u>정부간 수출계약</u> 등에 관한 업무를 하게 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업무) ----- ----- ----- ----- ----- <u>정부간 수출계약, 경제안보 지원 등</u> ----- ----- -----.
제3조(사무소) ① (생 략) ② 공사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내외 필요한 곳에 <u>지사 · 무역관 · 사무소</u> 또는 주재원(駐在員)을 둘 수 있다.	제3조(사무소)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지사 · 무역투자관 · 사무소</u> ----- ----- -----.
제10조(사업) ①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 6. (생 략) 7. <u>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 전문인력의 유치 지원 및 국내 전문인력의 해외 창업 ·</u>	제10조(사업) ① ----- ----- -----. 1. ~ 6. (현행과 같음) 7. <u>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첨단산업 분야를 포함한 해외 전문인력의 유치 지원</u> -----

취업 지원 8. ~ 9. (생략) 9의2. (생략) <u><신설></u> <u>10. 시설의 운영, 전문인력의 교육·훈련 및 육성 등 제1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9호의2의 사업에 딸린 사업</u> <u>11. 다른 법률에 따라 공사가 할 수 있는 사업</u> ② (생략)	----- ----- 8. ~ 9. (현행과 같음) 10. (현행 제9호의2와 같음) <u>11. 공급망 모니터링, 다변화 및 자립화, 긴급수입 등 공급망 안정화와 관련된 사업</u> <u>12.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u> <u>13. 국내기업의 수출물류 및 해외진출기업의 해외 물류 지원</u> <u>14.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및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관련 지원</u> <u>15. 서비스 분야 해외진출 지원과 전자상거래 등 디지털·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무역거래 지원</u> <u>16. -----</u> -----제15호까지 ----- <u>17. (현행 제11호와 같음)</u> ② (현행과 같음)
--	--